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('15.7월, 국무회의) 수립

나. 국제교육협력담당관-8778('15.12.8.),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보고

>

2. 위호와 관련하여 「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」 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관계기관(부서)에서는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>

- 아 래 -

① 입학 시 한국어 능력 기준 조정		
-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이상 입학,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	⇒	- TOPIK 2급은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를 조건으로 입학,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
- 입학?졸업을 위한 어학능력 기준 완화 과정 * 에 이종 언어과정(한국어-외국어 진행) 포함 * (현행) 교환학생, 정부초청장학생, 외국정부지원 장학생, 예체능 학과 입학생,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		
② 한국어 과정 졸업 학점으로 일부 인정		
-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한국어과정 교과목의 경우 대학 자체 학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		
③ ‘유학생 유치?관리 역량 인증제’ 관련 내용 반영		
- 한국어 및 영어 능력 기준 입증 방법 구체화		
④ 법무부 ‘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’ 개정 내용 반영		
- 대학부설 어학원 요건, 입국절차 예외 대상 명시 -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명확화		

>

>

붙임 1.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 안내 1부.

2.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1부. 끝.

교육부장관



사립대학제도과장, 산학협력정책과장, 지역대학육성과장, 전문대학정책과장,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, 학술진흥과장, 대학재정과장, 대학학사제도과장, 대학장학과장, 평생학습정책과장, 인재직무능력정책과장, 진로교육정책과장, 직업교육정책과장, 국립국제교육원장(글로벌인재양성부장)

일반문서첨부 15120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 개정.hwp, 151209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.hwp

주무관	12.08 박준혁	행정사무관	12.09 박봉서	교육개발협력	전결 12.09 장미란
시행	국제교육협력담당관-8807 (2015.12.09)			접수	자연계교육지원팀-0785 (2015.12.11)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-1동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					/ www.moe.go.kr
전화 044-203-6767	전송 044-203-6795			/ jhpark12@moe.go.kr	/ 공개